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1가단15143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찬

변 론 종 결 2022. 11. 29.

판 결 선 고 2023. 1. 10.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21. 7. 2.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6,66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666,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3. 9. 소외 C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26., 대출이율 및 연체이율 연 27.9%로 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채권은 소외 회사에서 E 주식회사를 거쳐 원고가 2018. 10. 26. 양수하였다.

나. 원고가 위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2019차전35708), 위 법원은 2019. 4. 24. ‘C는 원고에게 4,772,823원 및 그중 2,640,460원에 대하여 2019.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3. 30. 상속인으로 배우자 G, 자식으로 피고, C를 두고 사망하자, 위 상속인들은 2021. 7.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고 2021. 7.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대구지방법원 상주등기소 2015. 10. 16. 접수 제61541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명의의 채권최고액 221,76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①번 근저당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168,729,754원이고, ② 같은 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63432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13,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②번 근저당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피담보채무액은 10,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 지분 이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위 지급명령 상의 채무 이외에 원금을 기준으로 J에 대하여 10,759,000원, K에 대한 17,888,000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4,552,000원의 각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I조합에 대한 각 제출명령 회신 결과, 이 법원의 대법원, 대구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채무자 C는 그 상속지분인 이 사건 부동산의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채무자 C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여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피고는 망인을 봉양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구입하였으므로 이를 기여분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그 재산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그 미달하는 부분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는데, 이때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으로 인한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 명의로 구입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2) 채무상속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이외에 망인 명의의 M은행 마이너스 대출금 채무 5,000,000원과 망인이 교회 지인에게 빌렸던 채무 3,000,000원 합계 8,000,000원의 채무도 함께 인수하였으므로 피고가 취득한 공동담보가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망인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이 피고가 망인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C가 망인의 상속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은 2,285,714원($= 8,000,000원 \times 2/7$,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임에 비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금액 23,220,070원($= 81,270,246원 \times 2/7$)이 더 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 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가. 가액반환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5. 10. 22. 접수 제63432호로 채권최고액 13,000,000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I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위 등기는 이 사건 분할 협의 이후 2021. 10. 2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가액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나. 원상회복의 범위

1)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반환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와 가액반환은 사해행위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동산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며,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2021. 11. 16. 기준으로 6,666,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채무자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6,666,000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5.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60,000,000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보다 낮지는 않은 금액일 것으로 추인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번 근저당과 관련하여 168,729,754원의 피담보채무, ②번 근저당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의 피담보채무가 각 존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81,270,246원(= 260,000,000원 - 168,729,754원 - 10,000,000원)이 되고, 이중 C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액은 23,220,070원(= 81,270,246원 × 2/7)이 된다.

다) 결국, 위 각 금액 중 더 적은 C에 대한 피보전채권액 6,666,000원이 피고가 반환할 가액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분할 협의는 6,666,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반환으로 원고에게 6,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진영

별지